

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

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 및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유·경영 미분리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.

1. 회사 개황

1-1 회사명				
1-1-1 회사명 변경 여부				
1-1-2 변경 전 회사명(1-1-1에서 “예”인 경우)				
1-2 회사 고유번호				
1-3 법인등록번호				
1-4 사업자등록번호(본점)				
1-5 당기 사업연도	제○기	YYYY년 MM월부터	YYYY년 MM월까지	OO개월
1-5-1 당기 사업연도 결산기 변경 여부				
1-5-2 결산기 변경 내용(1-5-1에서 “예인 경우)	MM월에서 MM월로 변경			
1-6 대표자명				
1-7 전화번호				
1-8 주소	우편번호			
1-9 신고서 제출 공문 사본 첨부				
1-10 감사인 대리제출 여부				
1-11 최근 1년 이내 합병 분할 내역				
1-12 금융회사 여부				

기재상의 주의

- 1-2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회사의 고유번호를 기재한다.
- 1-5 ①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회사는 “지정대상 선정일의 기산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”를 당기 사업연도로 기재한다.(2-2, 2-4, 2-5, 2-6, 2-6-1, 2-6-2 동일)
 ② 당기 사업연도의 개월 수에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올림하여 기재한다.
- 1-7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.
- 1-9 회사가 이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기 위한 공문을 첨부한다. 동 공문에는 회사명, 대표이사 직인 및 “당사는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제1항 및 「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유·경영 미분리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(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, 그 외 비상장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)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합니다.”라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. 한편, 감사인이 신고서를 대리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위임장 사본도 함께 제출한다.
- 1-11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합병·분할기일(등기일), 회사명(금감원 고유번호)을 기재한다.
- 1-12 지정대상 선정일 현재 금융회사(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 및 농협은행을 말한다)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한다.

2. 신고 사항

2-1 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여부						
2-1-1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횟수						
2-1-2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사유						
2-1-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일						
2-1-4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	▼ 경고 초과/경고 이하					
2-2 최근 6개 사업연도 감사인 선임 방법	당기	전기	2기 전	3기 전	4기 전	5기 전
2-3 과거 6년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여부						
2-3-1 감리횟수						
2-3-2 감리업무 수행기관	▼ 금융감독원/한국공인회계사회					
2-3-3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 여부						
2-3-4 조치없이 감리가 종결된 일자						
2-4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의 당기 감사 차수						
2-5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						
2-5-1 사업보고서제출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	▼ 예 / 아니오					
2-5-2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	▼ 예 / 아니오					
2-5-3 그 외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여부	▼ 예 / 아니오					
2-6 지배주주(특수관계자 포함)의 지분율						
2-6-1 발행주식총수						
2-6-2 지배주주(특수관계자 포함)의 소유주식 수						
2-6-3 지배주주명						
2-6-4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인 주주의 수						
2-7 대표이사와 지배주주와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						
2-8 지배주주(특수관계자 포함)의 지분현황 사본 첨부						
2-9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첨부						
2-10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첨부						
2-11 지정대상선정일 현재 소유경영미분리 상태 해소 여부						
2-11-1 해소사유						
2-11-2 해소 증빙 서류(지정대상 선정일 기준의 2-8, 2-9 해당 서류)						
2-12 외부감사법상 조치에 대한 소송 등 내역						

기재상의 주의

- 2-1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.
- 2-1-1 2-1에서 “예”인 경우에만 기재한다.(2-1-2~2-1-4 동일)
- 2-1-2 조치사유에는 해당 법률의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.(예시 : “회계처리기준 위반”, “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” 등) 조치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조치사유를 조치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.
- 2-1-3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연·월·일(YYYY-MM-DD)을 기재한다. 조치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조치일자를 조치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.
- 2-1-4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내용을 “경고 초과” 또는 “경고 이하”로 구분하여 기재한다. 조치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조치내용을 조치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.
- 2-2 회사의 당기 이전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외부감사를 “자유선임” 또는 “증권선물위원회 지정”으로 구분하여 자유선임인 경우 “자유선임”,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지정받은 경우 “지정”이라고 기재한다.(외부감사대상이 아닌 사업연도는 “해당없음”을 기재)
- 2-3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6년 이내에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받았는지 여부를 기재한다.
- 2-3-1 2-3에서 “예”인 경우에만 기재한다.(2-3-2~2-3-4 동일)
- 2-3-2 감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감리업무 수행기관을 감리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.
- 2-3-3 2-3의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,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조치(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를 받았는지 여부를

기재한다. 감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감리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.

2-3-4 2-3의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,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유로 조치를 받지 않고 종결된 경우 그 종결일자를 기재한다. 감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감리순서대로 각각 기재한다.

2-4 3개 사업연도 연속감사인 경우 그 3개 사업연도 중 당기 사업연도가 해당하는 차수를 기재한다.

2-5 직전 사업연도말(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회사는 당해 지정대상 선정일의 기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한다) 개별 재무제표(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회사인 경우 별도재무제표)상 자산총액을 원 단위로 기재한다.

2-5-1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
2-5-2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
2-5-3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
2-6 ①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(2-6-1~2-6-4, 2-7~2-9에서 같음)으로 기재한다.

② “지배주주”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“지배주주등”을 말한다.(이하 이 별지에서 같다)

③ “특수관계자”는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말한다.(이하 이 별지에서 같다)

2-6-1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하여 산정한다.(2-6-2 동일)

2-6-3 지배주주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.

2-6-4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자 중 당해 회사의 주주인 특수관계자의 수를 기재한다.

2-8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별 성명(법인명), 주식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), 지분을 및 총 발행주식수(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) 현황을 첨부한다.

2-9 직전 사업연도와 관련된 「법인세법 시행규칙」 제82조제1항제52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을 첨부한다.

2-11, 2-11-1, 2-11-2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였으나 지정대상 선정일 이전 동 상태가 해소된 경우 2-11-1에 소유경영미분리 해소사유를 기재하고 2-11-2에 수정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 현황자료(지정대상 선정일 현재) 및 ‘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(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, 직전사업연도말~지정대상 선정일)’를 첨부한다.

2-12 「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」상 조치와 관련된 소송, 심판 및 집행정지 등의 내역을 기재한다. 이 때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과거 1년 이전에 종료된 내역은 제외한다.